



(금융회사보관용)

대한민국 정부 인자세
원
강남구세무서장
후납승인 2011년 9호

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

신규 승계 재금융(승계 및 재금융 시 기존 계약번호 기재)
 상품명 : 클래식 상환유예 ()
 계약 번호 :

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|---|--|--|--|---|
| 차량 | 차종 | ()년식 | | 최초등록일 | 년 월 일 | |
| | 차량번호 | 차대번호 | | 상품 종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고차 | |
| 금융조건 | 차량가격 | 원 | 등록비용 | 원 | 차량인도(예정)일 | 년 월 일 |
| | 선납금 | 원 | 할부금융자금 | 원 | 할부기간 | 개월 |
| | 회차 | 월 할부금 | 이자율 | 상환 대상 원금 | 할부 시작일 | 년 월 일 |
| | (1)회~()회 | 결재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자 금액 변동으로, 1회차 월할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| | 할부 만료일 | 년 월 일 |
| | | 원 | 연이자율 () % | 원 | 실제연간요율 | 연 () % |
| | ()회~()회 | 원 | 연이자율 () % | 원 | 지연배상금률 | |
| | ()회~()회 | 원 | 연이자율 () % | 원 | 1. 대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 지연배상금률 = 약정이자율 + 3% | |
| | 만기시 추가납입금액 | 원 (<input type="checkbox"/> 상환유예금액) | 최종 | 원 | 2. 대부 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+3%를 적용한다. 가. 「상법」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상환금융 가계저금대출금리 | |
| | 할부금(총납부금액) | 원 | 자동차근저당권설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 순위: 1순위 금액 | 원 | * 거차기간은 정상기간 약정이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* 지연배상금률은 법정최고금리(24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|
| | 담보조건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근저당권설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대보증인()명 | | | | |
| 납부방법 |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월 후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상환(전액/ 일부) | | |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%씩 부담 (고객 부담금액 원) | | |
| 중도상환수수료 | 중도상환수수료율 | | (%) | | | |
| | [만기 1년 이상 대출] 중도상환수수료는 「중도상환원금x1%(부대비용)+중도상환원금x(중도상환수수료율%-1%)x잔존기간*/(대출기간-30일)」으로 합니다. *30일 미만 상환 시 '대출 사용기간'을 30일로 간주합니다. [만기 1년 미만 대출] 중도상환수수료는 「중도상환원금x(중도상환수수료율%)x잔존기간*/(대출기간-30일)」으로 합니다. *30일 미만 상환 시 '대출 사용기간'을 30일로 간주합니다. | | | | | |

| | | | | | |
|---|--|---|------|------------|--|
| 연대보증인 | ※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,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. | | | | |
| | ※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-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: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, 「주택법」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공사 -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: 가. 대표이사 / 나. 무한책임사원 / 다. 「상법」에 따른 최대주주 / 라.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)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/ 마. 그 밖에 가로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| | | | |
| | ※ 보증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근보증(당해채무 - 기간연장, 증액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한정근보증(특정+동일 종류 신규대출) | | | | |
| | 성명/법인명 | | |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
| | 주민등록지 | | | 실제거주지 | |
| | 할부금융이용자와의관계 | | | 전화번호 | |
| | 직장(사업자)명 | | | 부서명 | |
| | 직위 | | | 재직(사업)기간 | |
| | E-mail | | | 청구서 수령방법 |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(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제거주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등록지)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수령 |
| | 보증채무액 | 원 | 보증기간 | 개월 | |
| ※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(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)의 130%입니다. | | | | | |

할부금융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,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여신거래 기본 약관 및 할부금융약관서와 해당상품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거래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우편으로 제공되는 핵심설명서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할부금융이용자 서명 또는 (인)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(인) 년 월 일

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
 대표이사 강 형 규
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, 4층
 (청담동, 신영빌딩)
 www.vwfs.co.kr/vw

| | | | |
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매도인 | 딜러명/전시장 | 주소 | |
| | 판매담당자 | 서명 또는 (인) 연락처 | |
| | 금융담당자 | 서명 또는 (인) 연락처 | |
| 상기 내역이 사실임과 담당자의 입회 하에 할부금융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자필서명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| | | |